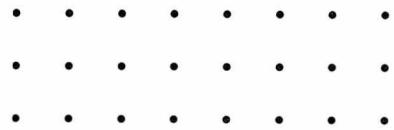


환경부공고 제2007-229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년 6월 22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법률 제8404호, 2007. 4. 27)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황사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대통령령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수립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변경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1항 신설)
-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소관별 추진대책 제출 절차 등을 규정(안 제3조제2항 신설)
- 다. 황사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 신설)
- 라. 황사대책실무위원회에 대한 기술자문과 황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황사연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 마.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대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정책과

☎ : 02)2110-6783, 6807, 6859 / FAX : 02)504-9208 / E-mail : broaden@me.go.kr

환경부공고 제2007-222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2007년 6월 15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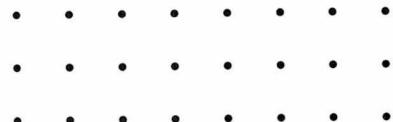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막기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에 의거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승인대상 종(333종)수가 적어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자생생물 중의 고유종, 경제적 활용가치가 있는 종 등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확대 지정하여 국내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 고시된 333종 이외에 생물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아 국외반출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195종(어류 10종, 곤충류 86종, 식물 99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신규 지정하여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환경부고시 제2007-92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2007년 6월 4일
환경부장관

◇ 주요 개정내용

가. 편집체제를 제1편, 제1장, 1, 1, 가. 1), 가), (1), (가)의 순서로 하고, 단위·용어 개정 등 고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 아름답고 알기 쉽게 바꾼 '환경용어집(환경부, '05)'을 참고하여 용어를 순화함

나. 수처리제 제조업체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응집제 중 탁도제거효율 등 성능을 향상시킨 제품의 규격을 검토·반영함.

-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을 1호와 2호로 구분하여, 기존 규격을 1호로 하고 기존규격 중 산화알루미늄과 이산화규소의 함량을 낮추고 염기도를 높인 품목을 2호로 추가

○ 폴리염화알루미늄의 염기도 기준을 기존 35~60% → 35% 이상으로 개정하여 고염기도 제품의 규격 반영

다. 정수장 등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제조염소를 수처리제(소독제)로 새로이 고시하고, 수산화칼슘(기타제제) 중 액상 규격을 추가함.

라. 방청제의 명칭을 부식억제제로 개정하고 사용대상을 급수관에서 수도관으로 확대함.

- 부식억제제의 함량기준을 표시량±2에서 표시량±1로 하여 오차범위를 축소함

○ 인산염계 부식억제제의 성능 및 외국 규격현황(EN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투입할 수 있는 인산염(P_2O_5)의 농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0mg/L$ 이하에서 $5mg/L$ 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먹는물 중 규산염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보완함

※ 보다 자세한 법률의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n.go.kr→법령마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